

영토와 영유권 분쟁 그리고 독도

독도에 대하여

• EASY AND SIMPLE •

• PRESENTATION •

2251941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이해원

독도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소속된 섬.
독섬/돌섬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4㎡이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서도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동도는 동경 131° 52' 10.4", 북위 37° 14' 26.8"에, 서도는 동경 131° 51' 54.6",
북위 37° 14' 30.6"에 위치한다. 동도·서도간 거리는 151m로 좁은 수도를 이룬다.
동도는 해발고도 98.6m, 면적 73,297㎡, 둘레 2.8km이고, 서도는 해발고도 168.5m,
면적 88,740㎡, 둘레 2.6km이며, 부속도서 89개의 면적은 25,517㎡이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찰할 수 있다.



독도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지증왕 13년 하슬라주 군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등에서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에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삼국시대부터 신라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만기요람] 등에도 고려 및 조선시대에 울릉도와 독도를 통치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밖에 독도는 [안락당집] 등에는 삼봉도, [일성록] 등에는 가지도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독도

1900년 (고종 37)에는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를 통하여 대한제국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죽도와 석도를 통치한다고 선포하였다. 석도는 '돌로 된 섬'이라는 뜻의 '돌섬'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전라도 방언에서는 '돌'을 '독'이라 하여 전라도 남해안 출신의 울릉도 초기 이주민들은 '돌섬'을 '독섬'이라 불렀으며,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가 되었다고 한다. 독도가 행정지명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중앙정부에 올린 보고서로 알려져 있다.

독도

한편, 유럽에서는 독도를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 암(프랑스)', '호넷 암(영국)' 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1905년에 일본은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고 시마네현에 편입한 뒤 계속해서 근거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한국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2005년 3월 16일 매년 2월 22일 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같은해 3월 17일 일반인에게 독도 방문을 전면 허용하고 대일 신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대일 신 독트린: 한국 정부가 과거사 및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2005년 3월 27일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상임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대일 외교 정책. 일본의 식민지 침탈 정당화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시대착오적인 일본의 역사 왜곡에 국제 사회 및 일본 내 양심 세력들과의 연대 강화 따위를 내용으로 한다.

독도 기후 및 기상 조건

- 기후 유형: 독도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연중 기온 변화가 비교적 완만하고 습도가 높다.
- 평균기온: 연평균 약 12도 / 8월 평균 최고기온 약 24~26도 / 1월 평균 최저기온 약 0~2도
- 강수량: 연강수량 1,200~1,400mm 수준 / 비와 안개가 자주 발생함
- 강풍 및 태풍 영향: 연중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음 (초속 10m/s 이상 바람 빈도 높음) / 태풍 경로에 자주 포함, 특히 여름~초가을
- 안개 및 시정: 연중 약 160~180일 안개 발생 / 평균 시정거리 짧고, 시계 확보 어려움-기상 악화로 접근 제한 잦음
- 기후 변화 영향: 최근 수온 상승, 날씨 변화 빈도 증가

독도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1) 식물상

- 독도는 토양이 얇고 바람과 염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식생이 풍부하진 않지만, 특화된 자생식물이 존재한다.
- 대표식물: 섬기린초, 갯제비쑥, 독도까치수염, 해국 등 (현재까지 확인된 관속 식물 약 60~80여 종)
- 외래종 유입 주의: 민간인의 출입 및 인간 활동 증가로 일부 외래 식물 유입 사례 있음 (ex. 돼지풀)

독도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2) 조류(새)

- 독도는 바닷새의 주요 번식지로 매우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가짐.
- 주요 조류: 바다제비 (천연 기념물 제324-1호), 습새, 갯이갈매기, 바다오리 등
- 독도는 동해에서 유일한 바다제비 번식지로 생태학적 보호 가치가 높음

독도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3) 해양 생물

- 독도 주변은 난류(쓰시마 해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지역-생물 다양성이 매우 풍부
- 주요 어종 및 해양 생물: 오징어, 전복, 문어, 가자미, 도루묵, 성게 / 해조류: 미역, 다시마, 툫 등
- 희귀 해양 생물도 일부 서식-해양보호생물 모니터링 진행 중

독도 환경보호 및 보전 정책

- 천연보호구역 지정: 1982년, 독도 전체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및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
- 환경보전 관련 주요 정책: 입도 제한: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해 관광객 입도 제한(1일 최대 방문자 수 제한) / 탐방로 통제 및 지정 구간 이동 의무화 / 국립생태원,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정기적으로 생물, 환경 모니터링
- 감시 체계: 무인카메라, 생태계 자동 측정 장비 등을 통해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 / 외래종 관리, 해양 쓰레기 수거 등도 정기 시행

독도 환경적 가치와 위협 요인

(1) 환경적 가치

- 생물다양성 보전: 독도는 인간 간섭이 적고 고립되어 있어 희귀 해양, 조류 서식지로 가치가 높음
- 기후변화 연구: 동해 수온 변화, 태풍 경로 변화 등을 장기 관측할 수 있는 기후 감시 거점
- 교육 및 생태 연구 기지: 생물다양성 및 해양환경 변화 연구의 전초기지 역할
- 해양 영토 수호의 상징적 가치: 해양 환경 주권 확보와도 연계

독도 환경적 가치와 위협 요인

(2) 위협 요인

- 기후 변화: 수온 상승 및 강수 패턴 변화로 일부 해양 생물의 서식지 이동 발생
- 외래종 침입: 관광객, 조사 인력 등에 의해 비의도적 외래종 유입
- 관광 및 군사 시설의 영향: 잦은 출입, 구조물 설치 등이 생태계의 부담
- 해양 오염: 동해안 해류를 따라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문제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삼국사기

우산국 복속

신라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합니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동국문헌비고』 (1770년)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세종실록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울릉도 전경

자료제공 : 울릉군청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渡海) 면허
일본 막부가 돛토리번(지금의 돛토리현)에
살고 있는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에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渡海)를
면허한 것입니다.

면허를 내린 시기는 1618년, 또는
1625년이라고도 합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속증실록

안용복(安龍福) 일본 납치
안용복(安龍福), 박어둔(朴於屯)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합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울릉도 전경

자료제공 : 울릉군청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합니다.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 수토 :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해서
조사하거나 살핌.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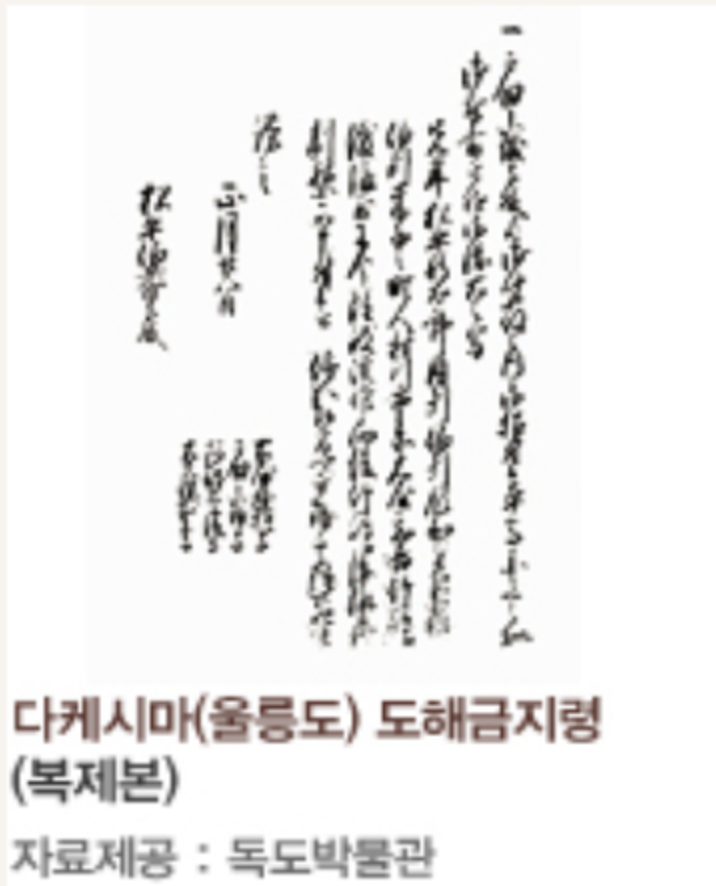
돛토리번 답변서 (복제본)

일본 돛토리번 답변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돛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12월 24일)했습니다.

이에 대해 돛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돛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12월 25일)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1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습니다
(1696년 1월 28일).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하였습니다(1699년).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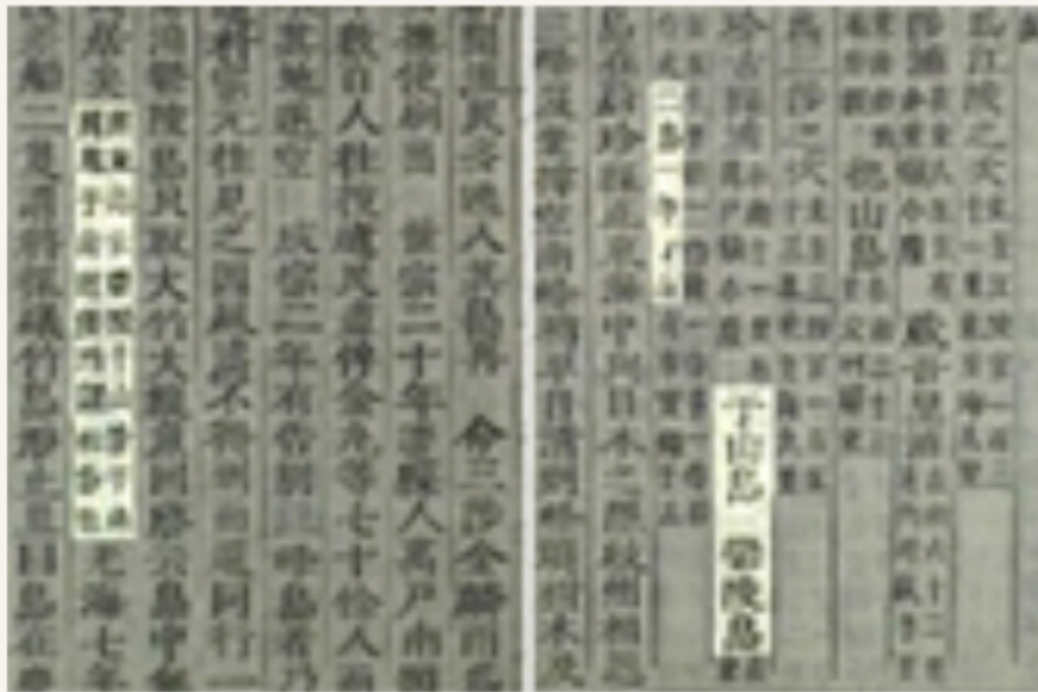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5월. 안용복(安龍福) 일본 도해
안용복(安龍福)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자산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까지 다녀온 사건입니다.

이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동국문헌비고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입니다.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라고 하였습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복제본)

자료제공 : 독도박물관

일 외무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태정관지령

「태정관(太政官)지령」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입니다.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던 것입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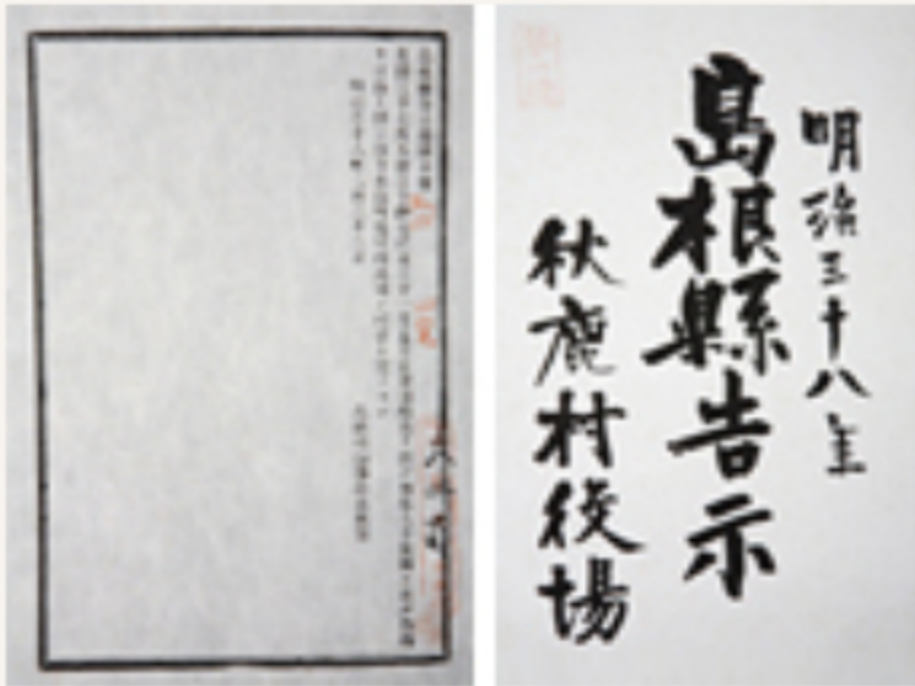


칙령 제41호

칙령(勅令) 제41호 반포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을 제정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鬱島郡)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鬱陵全島),
죽도(竹島)와 함께 석도(石島, 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시마네현고시 제40호 (복제본)

자료제공 : 독도박물관

시마네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입니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보고서 호외 및 지령 제3호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內部, 현재의 행정안전부에 해당)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SCAPIN 제677호 관련 지도
(복제본)

자료제공 : 독도박물관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입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SCAPIN 제677호 관련 지도
(복제본)

자료제공 : 독도박물관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입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자료제공 :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

1. 역사적 근거

일본은 다케시마가 에도 시대(17세기)부터 일본 어민들, 특히 오키 섬 주민들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다케시마를 정식 편입했다며, 당시에는 어떤 나라도 이 섬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무주지 선점 이론).

2. 국제법적 근거

1905년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고, 이후 명확한 행정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의 포고령 및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기도 합니다.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

3. 행정적 근거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가 지금도 시마네현의 일부로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

일본은 한국이 1952년 '평화선(리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이후 독도를 점거한 것을 "국제법에 위배되는 불법 점거"라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